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향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자 유 무 역 지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660호,
2021. 12. 28. 공포)됨에 따라, 법 조문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인용
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,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권한 위임·
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, 임대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,
입주관리 요령 공고 등의 실질적 업무처리 기관을 법령상 업무 위임·위탁
기관으로 반영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(안 제18조의3제1항, 제
26조제4항, 제30조제4항제2호, 별표 제2호나목2),3))

나. 권한 위임·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, 항만형 자유무역지역
사무처리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제4항·제7항·제8항·제1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3. 16. ~ 4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제1항 중 “제29조제3항제2호”를 “제29조제4항제2호”로, “법 제29조제3항제2호”를 “법 제29조제4항제2호”로 한다.

제26조제4항 중 “법 제38조제4항”을 “법 제38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4항제2호 중 “법 제29조제2항”을 “법 제2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, 공장의 등록, 공장 등록증명서의 발급, 공장의 등록취소

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재산 및”을 “재산,”으로, “재산에”를 “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”로, “제3호부터 제5호까지,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, 제17호 및 제18호”를 “제3호, 제5호부터 제7호(매각은 제외)까지, 제10호,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, 공장의 등록, 공장등록
증명서의 발급, 공장의 등록취소

제40조제7항제8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법 제19조에 따른”을 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(중전의 제9호) 중 “채납처분”을 “채납처분 및 임대계약(입주계약)의 해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”를 “(「항만법」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,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,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

6.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, 채납처분 및 임대계약(입주계약)의 해지

10.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
제40조제1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,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

6.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, 채납처분 및 임대계약(입주계약)의 해지

10.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공고

별표 제2호나목2) 중 “법 제30조제2항”을 “법 제30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3) 중 “법 제30조제2항”을 “법 제30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란의 법 제70조제2항제7호란 중 “법 제70조제2항제7호”를 “법 제70조제3항2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의3(사용·소비 신고의 대상 등) ① 법 제29조의2 전단에서 “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”이란 법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.	제18조의3(사용·소비 신고의 대상 등) ① ----- ---제29조제4항제2호----- ----- ----- 법 제29조제4항제2호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재고 기록 등) ① ~ ③ (생략)	제26조(재고 기록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38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5년을 말한다.	④ 법 제38조제5항----- ----- -----.
제30조(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) ① ~ ③ (생략)	제30조(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국 물품 확인서</u>	2. <u>법 제29조제3항</u>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4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생략)	제4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 등록증명서의 발급</u>	4. <u>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, 공장의 등록,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, 공장의 등록취소</u>
5. ~ 21. (생략)	5. ~ 21. (현행과 같음)
⑤·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「항만공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사법」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,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수익 허가된 재산,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「항만법」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제1호, 제3호부터 제5호까지,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, 제17호 및 제18호의 권한은 제외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~ 6. (생략)

7.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

8. (생략)

9.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

---- 재산, -----

----- 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
---- 제3호, 제5호부터 제7호(매각은 제외)까지, 제10호,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, 공장의 등록,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, 공장의 등록취소

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
8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의 ----

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10. -----

의 독촉 및 체납처분

10. ~ 20. (생략)

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(「항만공사법」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,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수익 허가된 재산,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만을 의미한다)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에 위탁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5. ~ 7. (생략)

<신 설>

----- 체납처분 및 임대
계약(입주계약)의 해지

11. ~ 21. (현행 제10호부터 제 20호까지와 같음)

⑧ -----

----- (「항만법」 제66
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
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
어 관리하는 재산,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
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

6.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
의 독촉, 체납처분 및 임대계
약(입주계약)의 해지

7. ~ 9. (현행 제5호부터 제7호
까지와 같음)

10.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
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

8. · 9. (생략) ⑨ · ⑩ (생략)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재산 중 「항만법」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 관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설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5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8. · 9. (생략)	<u>경공고</u> 11. · 12. (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) ⑨ · ⑩ (현행과 같음) ⑪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</u> 6. <u>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,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(입주계약)의 해지</u> 7. ~ 9. (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 10. <u>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공고</u> 11. · 12. (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)
---	--

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1조 관련)

1.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 조문	과태료 금액
가. ~ 다. (생략)		

2.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
가. 일반기준 (생략)

나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 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) (생략)				
2)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3항제2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
3)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7호	10만원	30만원	50만원
4)~10) (생략)				

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1조 관련)

1. -----

위반행위	근거 법 조문	과태료 금액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

2. -----

가. 일반기준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위반행위	근거 법 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) (현행과 같음)				
2) 법 제30조제3 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3) 법 제30조제3 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법 제70 조제3항 제2의2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4)~10) (현행과같음)		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	
연 락 처	(044) 203 - 4631